# 빠飕∰노량진캠퍼스 매일정리노트(O,X)

부동산공법 고상철 교수

8회 (03/03)

| 4  | を 10 ひ 20 つ ひ | 7 7 11 |      | -1] 1 T | 그리 계위 시기되니 | /   | \ |
|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|---|
| l. | 유게음식섞은        | 규모에    | 관계없이 | 제1종     | 근린생활시설이다   | · ( | ) |

| 2. | 허가대상에  | 해당하는 경 | 우로 용도변경 | ! 하고자 하는 | - 부분의 비 | ·낙면적의  | 합계가 | 100 m <sup>2</sup> |
|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   | 이상인 용도 | 변경 설계는 | 건축법의 설계 | 계에 관한 규정 | 성을 준용한1 | 다. ( )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
- 3. 일반음식점이 바닥면적합계가 300㎡미만인 경우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이고, 바닥면 적합계가 300m²이상인 경우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다. ( )
- 4. 종교집회장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m²미만인 경우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다. ( )
- 5. 장의사, 장례식장, 화장장은 묘지관련시설이다. (
- 6. 단란주점(바닥면적 150㎡이상). 안마시술소. 노래연습장은 위락시설이다. ( )
- 7.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은 자동차관련시설이다. (
- 8. 유스호스텔은 관광·숙박시설이다. ( )
- 9. 주유소는 자동차관련시설이다. ( )
- 10. 어린이회관은 교육연구시설이다. (
- 11. 벽면적을 30㎡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대수선이다. ( )
- 12.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 야 한다. ( )

## 매일정리노트(O, X) 정답

- 1. (X) 바닥면적 합계가 300㎡미만인 휴게음식점은 제1종근린생활시설, 300㎡이상인 휴게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.
- 2. (X) 500㎡이상인 용도변경 설계인 경우이고 100㎡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3. (X) 일반음식점은 면적(바닥면적의 합계)과 관계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다.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주류판매의 가능성에 따라 분류한다. 주류판매가 가능하면 일반음식점 불가능 하면 휴게음식점이다.

# 메는 에 일정리노트(O.X)

부동산공법 고상철 교수

8회 (03/03)

- 4. (X) 종교집회장은 500ml미만인 경우는 제2종근린생활시설, 500ml이상인 경우는 종교시설에 해당한다.
- 5. (X) 장의사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, 장례식장은 장례시설(의료시설 아님), 화장장은 묘지관련시설이다.
- **6. (X)** 단란주점(바닥면적 150㎡이상)은 위락시설이나 나머지는 아니다. 단란주점(바닥면적 150㎡ 미만), 안마시술소, 노래연습장은 제2종근린 생활시설이다.
- 7. (X)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은 운수시설이다.
- 8. (X) 유스호스텔은 수련시설이다.
- 9. (X) 주유소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다.
- 10. (X) 어린이회관은 관광휴게시설에 해당한다.
- 11. (X) 내력벽 30㎡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 대수선이다. 일반 벽면적이 아니다. 항상 내력벽의 벽면적을 찾아야 한다.
- 12. (X)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궈자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.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.

참고) 지하층의 전체적인 개념 끝내기

- 1)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당해 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층높이의 1/2이상인 것
- 2)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되지 않는다. 용적률 산정시에 연면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. 연면적에는 지하층면적은 포함됨

### [지하층 간단 정리]

- ① 바닥~지표면 평균높이→층 높이 1/2 이상 1. 땅 밑에 들어간 부분이 층높이 1/2이상
- ② 층수 X, 연면적 O, 용적률 X
- ex) 층고: 4m, 평균높이: 2.5m → 지하층 3. 용적률 산정시 포함 X
- ex) 층고: 4m, 평균높이: 1.5m → 지상층 4. 연면적에는 포함 됨
- ex) 층고:4m, 평균높이:2m → 지하층

### [지하층]

- 2. 층수포함 X

- 5. 지하층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사항

🎳 문제풀이로 정리하는 이론

필출 문제) 거축법령상 '지하층'에 대한 설명이다. 올바르지 않은 것은?

- ①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한다.
- ② 지하층은 연면적에는 산입한다.
- ③ 지하층은 용적률 계산시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.
- ④ 지하1층 바닥면적은 100㎡, 지상 1층, 2층의 바닥면적은 각각 100㎡ 이다. 이 건물의 연면적은 300㎡이다.
- ⑤ 층의 높이가 4m이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2.5m 이면 지하층에 해당한다.
- \*\* 정답: ①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.